

[별지 제7호]

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

문서번호 경영지원X-

2016. 11.07 .

수 신 금융감독원장

참 조 자산운용감독실 자산운용총괄팀

제 목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2016. 10. 28. 개최된 이사회에서 불임과 같이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붙 임 : 1.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내용 1부.

2.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표 1부. 끝.

(주)리치먼드자산운용 대표이사 (인)



작 성 자 : 이기현 (부장)

전화번호 : 02-6276-3041

(붙임 1)

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내용

1. 위험관리책임자 선임

성명 (한자)	직위	주민등록 번호	선임일	임기 (만료일)	업무범위	겸직 직위 및 업무	주요경력 ¹⁾	자격요건 확인결과
김진택 (金珍澤)	이사	720327- *****	2016. 10.28	2년 (2018. 10.27)	위험관리업무	해당없음	2008.10~2010.07 트러스트자산운용 리스크관리팀장 2010.12~2013.12 아주자산운용 준법감시인 2013.12~현재 리치먼드자산운용 리스크관리팀장	충족

주 1) 주요 경력란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학력 또는 기관에서의 근무경력과 최근 5년간의 근무경력을 연월 단위로 기재

(붙임 2)

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표

성명 (한자)	김진택 (金珍澤)	직위	이사	직전 근무처 및 직위	아주자산운용 이사
심사항목		심사결과			비고
1.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(이하 법이라 한다)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(별지 제1호서식 붙임2 참조)		해당없음			
2. 법 제28조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, 그 밖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인 없을 것 1)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)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		해당없음			
3.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. 다만,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8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.		해당없음			
4.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		해당없음			
<p><u>종합의견</u>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결과 결격사유 없음</p>					
<p>2016년 11월 11일</p> <p>(주)리치먼드자산운용 대표이사 (인)</p> 					

【첨부서류】

1. 이사회 결의서
2. 이력서*(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) 및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
*금치산자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'등록기준지(본적)'를 반드시 기재
3. 법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(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)
4.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,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그밖의 감독·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(감봉요구)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인사기록카드, 감독기관·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5. 법 제2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
6. 외국인의 경우 금융법규상 준법감시인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등)
7.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